

거창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

의안번호	33
------	----

제출일자 : 1998. 8. 22.

제 출 자 : 거 창 군 수

■ 개정이유

-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 운영중인 현행 조례의 일부조항이 지방재정법등 관계법령에 저촉되어 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 기금운용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

■ 주요골자

- 현행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에 기금을 예탁관리하도록 한 조항을 지방재정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 금고에 예탁관리 하도록 개정 (안 제3조)
-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8조에 규정된 기금의 용도를 열거하여 업무를 쉽게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 (안 제4조)
- 기금의 회계관리를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토록 하여 업무혼선 방지 (안 제5조)
- 기금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 운영토록 조문 신설 (안 제7조 내지 제9조)
 - 위원수 : 10인 이내 - 위원장 : 부군수
 - 위원구성 : 군본청 실·과장중에서 위원장이 선임
-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의회에 제출토록하고 기금운용계획에 포함할 사항등을 정함 (안 제10조)

■ 개정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제2항
- 경상남도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 표준안('98. 6. 1)

거창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

거창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제1조(목적) 이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해대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3조에 의한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기타 잡수입 등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 계좌를 별도로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 금고에 예탁관리하되, 매년 조성되는 기금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연도 사업의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예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4조제1항 및 영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재해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정비, 보수를 요하는 사항
2. 재해응급 복구를 위한 비용
3. 재해 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용역 사업
4. 소하천 및 하천시설중 제방·수문, 우량·수위관측시설 등의 정비사업
5. 하수도시설(하수종말처리장은 제외한다)중 하수관거의 정비사업
6. 수리시설중 용·배수로 및 보의 정비사업
7. 재해위험지구정비계획에 포함된 시설의 정비사업

제5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건설과장
2. 기금출납원 : 재난관리담당 주사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과장이 된다.

④위원은 군본청 실과장중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건설과 재난관리담당 주사가 된다.

제8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군수는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개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 기금의 조성계획
- 2 . 기금의 사용계획
- 3 . 기금의 운용방법
- 4 .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 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
<p><u>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군수는 법 제 63조 및 제64 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조성되는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조성금 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증식 효과가 높은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이나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등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연도 사업비 충당으로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예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u></p> <p><u>제4조(기금의 용도) 이 기금은 다음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해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정비, 보수를 요하는 사항 2. 재해응급 복구를 위한 비용 3. 재해 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용역 사업 4. 기타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업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u>제5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거창군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한다.</u></p>	<p><u>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군수는 기금의 수입과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 5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u></p> <p><u>②기금은 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 금고에 예탁관리하되, 매년 조성되는 기금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연도 사업의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예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u></p> <p><u>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4조제1항 및 영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용도외 에는 사용할 수 없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2. ----- 3. ----- 4. 소하천 및 하천시설중 제방·수문, 우량·수위관측시설 등의 정비사업 5. 하수도시설(하수종말처리장은 제외한다) 중 하수 관거의 정비사업 6. 수리시설중 용·배수로 및 보의 정비사업 7. 재해위험지구정비계획에 포함된 시설의 정비사업 <p><u>제5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u></p>

현행	개정
<p>제6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 운용관, 기금출납원을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금운용관 : 건설과장 2. 기금출납원 : 방재계장 <p>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제6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2. ----- 재난관리담당 주사 <p>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 15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p> <p>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 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과장이 된다.</p> <p>④위원은 군본청 소속실과장중 위원장이 임명한다.</p> <p>⑤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건설과 재난관리담당 주사가 된다</p> <p>제8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p>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p>

현행	개정
<p><u>제7조(결산 및 보고)</u> ①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기금운용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3월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②군수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u>제8조 (시행규칙)</u>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②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 한다.</p> <p>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u>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u> ①군수는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개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p> <p>②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p>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u>제11조 (시행규칙)</u> ----- -----</p>